

[보조금분쟁]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유용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 불복 행정심판 청구기각 결정: 2018경기행심1401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심판 재결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 4시간 근무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임명 - 교사 대 아동 배치기준 위반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731,000원과 급여차액 1,712,440원 부정수급한 사실

해다 보조교사 내부고발 신고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 원장 자

격정지 3개월, 부정수급 보조금(1,731,000원) 반환명령

제재처분 기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

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1호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

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p>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p> <p>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p> <p>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p>	<p>법 제46조제4호</p>	<p>자격정지 3개월</p>	<p>자격정지 6개월</p>	<p>자격정지 1년</p>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점, 기본보육료를 어린이집의 운영에 지출하였고, 시정명령 등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점, 직접 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이 보조금이고 아이사랑카드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지급 받은 것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반환명령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요지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임금 차액을 다시 돌려받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10두24371), 이 사건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

첨부: 2018경기행심1401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심판 재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